

※ 본 계획(안)은 사업 시행 공고전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최종 시행 공고와 다를 수 있음 (확정전 자료 이므로 대외 인용 금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안)

※ (부제)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통합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2018. 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목 차 ☐☐

I.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1
II. 사업 추진계획	2
1. 추진목적	2
2. 사업개요	2
<참고> 사업예시	3
III. 세부 추진계획	4
1. 사업 추진체계	4
2. 사업 선정방법	4
IV. 추진일정	9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계획(안)

추진배경

-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자 고용-복지-성장의 황금삼각형 구현 방안으로 주목
-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열쇠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필요
 - * 사회적경제 조직은 노인·장애인·수급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 비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주력

I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로 소관부처·지원제도가 분산되고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 민간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 저조*
 - * 참여율 : 장기요양 0.5%, 보육 0.4%, 바우처 4.0%, 장애인활동지원 3.1%
- (필요성) 지역 내 통합적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활용(컨소시엄 방식) 필요
 - 사회적경제는 민간 영리의 비중이 과다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 조직 간 연대·협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합적·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
 - * 예) 서울 성북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료, 발달재활, 긴급돌봄, 사회참여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구축

II 추진계획 (개요)

1. 추진목적

- ◆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통합적 사회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유도

2. 사업개요

- 시범 사업기간 : 2019년 3월~12월
 - * 시범사업 선정후 단년도 범위에서 추진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사업비 : 35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 개소당 50백만원 (7개소 × 평균 50백만원 × 보조율 70%)
- 지원대상 : 시군구 단위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 대표기관(1개) + 구성기관(2개 이상)
 - * 전체 참여기관의 50% 이상은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시군구 단위)에 소재해야 함
 - 대표기관 : 지역(시군구) 사회적경제 협의조직*
 - * 사회적경제 협의회·네트워크·연대회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 구성기관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자활사업단 포함),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추진체계

기관	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비 지원,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중앙 자문단 운영
시군구 컨소시엄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시군구 자문단 운영 포함) - 컨소시엄 예산 편성 및 집행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모집
(구성기관)	- 기관별 사회서비스 제공
자문 지원단	- 자문 협력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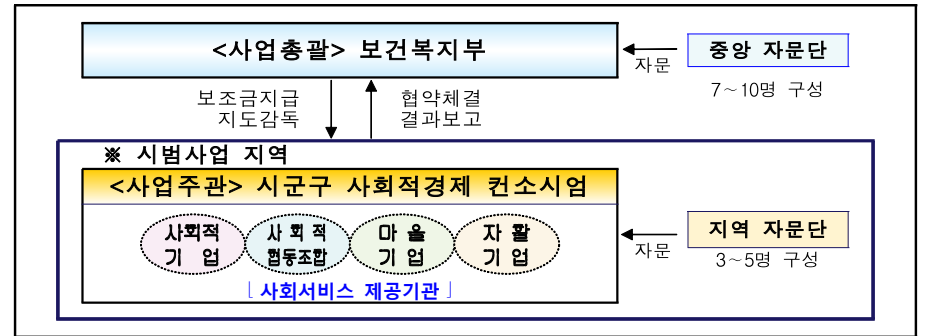
참고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 통합 사회서비스 사업 (예시)

서비스 대상	서비스명·내용	유사 사례
※ 지역 특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서비스 목록 재구성		
아동	마음이 키우는 아이 (영양+돌봄+놀이+교육)	
	학대피해아동 치유 프로그램 (심리상담+예술치료+교육+여행 등)	'굿네이버스' 통합 사례관리 모델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멘토링+가족·교우관계지원+진로교육 등)	한국스포츠클럽교육 희망나눔사업 (서울 서초구)
산모	산모 종합지원서비스 (산후조리+산후우울증 케어+첫째아이돌봄 등)	사회적협동조합 강북행복한돌봄 (서울)
중년·노인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신체돌봄+주거환경+정서지원+사회참여·취업 지원)	서울 양천구 '나비남 프로젝트'
노인	장기요양등급외자 통합돌봄 (신체+영양+정서+여가+가사지원)	서울 성북구, 광진구 노인통합돌봄서비스
	'Active Aging' 지원 (사전건강관리+사회참여+여가)	
장애인	장애아동 통합지원 (돌봄+치료+사회참여·취업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돌봄·치료+부모교육+비장애형제자매 정서지원+돌봄여행)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서비스 (치료+사회참여·취업+가족지원)	
주민	영구임대단지 사회돌봄 (마을공동식당+노인 요양보호+아동 방과후학습+건강지원+일자리제공)	광주 광산구 '상상프로젝트'

III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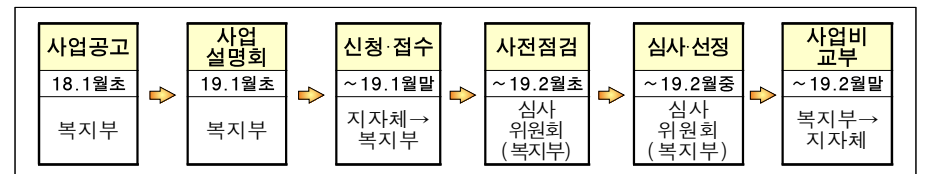
□ 사업 체계도



□ 사업절차

1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사업 계획 수립·공고 (복지부)	'19.1월초
2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성안 및 신청·접수* (시군구 → 복지부)	'19. 1월말
3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컨소시엄) 심사·선정** (복지부 → 시군구)	'19. 2월중
4	사업 시행 (시군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19. 3월~
5	중간 보고 (시군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복지부)	'19. 9월
6	완료 보고 (시군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복지부)	'19.12월

※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방법



□ 운영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평가 등 사업총괄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사업 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등)
- 중앙자문단 구성 운영

▷ (구성 개요) 사회적경제 민관 협의체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10명 내외로 구성(복지부 4, 학계 3, 현장 3)
 ▷ (역할) 시범사업 지역 선정, 현안 논의, 사업 결과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자문단(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별도)

○ 수행기관(시군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 (1단계) 컨소시엄 구성 (1~2월)

- 컨소시엄 구성 : 대표기관(1개) + 구성기관(2개 이상)
 * 전체 참여기관의 50% 이상은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시군구 단위)에 소재해야 함
- 대표기관 : 지역(시군구) 사회적경제 협의조직*
 * 사회적경제 협의회·네트워크·연대회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 구성기관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자활사업단 포함),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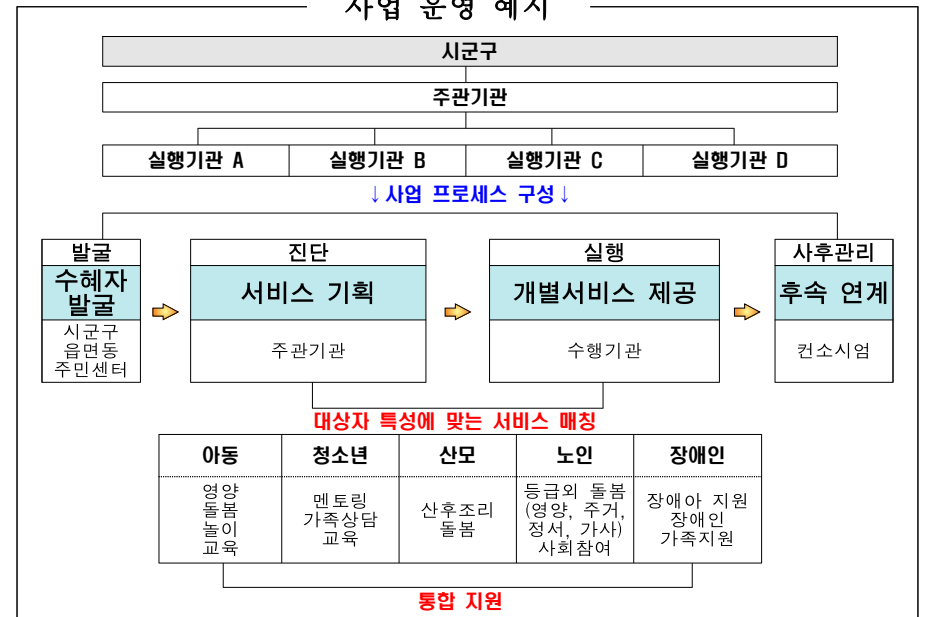
컨소시엄 구축 원칙

- ▷ 2개 이상의 분야별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필수
 * 예시) 사회적기업 2, 자활기업 1 (○) / 자활기업 3 (×)
- ▷ 지역내 고유 목적에 따라 구축된 자체 전달체계가 있는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을 별도 추진체계로 변경 또는 전환하여 연계 추진 가능
-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시군구 전체, 권역(읍면동) 단위로 컨소시엄 구축 가능
- ▷ 공모 참여시 컨소시엄 구축 계획(자치단체장 결재)까지 인정(단, 실현 가능성 등 공모 심사에서 판단)

▷ (2단계) 사업 시행 (3~12월)

구분	내용	비고
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시군구 자문단 운영 포함 - 컨소시엄 예산 편성 및 집행 - 컨소시엄 참여 조직 지원 - 사업 수행 모니터링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중간 보고(8월), 최종 보고(12월)	
주관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행 * 서비스 구성 수행기관 매칭 -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중간 보고(7월), 최종 보고(12월)	
수행기관	- 기관별 사회서비스 제공 및 결과 보고	

사업 운영 예시



2.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하여 선정

- 사회적경제 컨소시엄을 활용한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시군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추진

< 제안할 주요내용 >

- 사업범위 :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축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서로 다른 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협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돌봄, 보건의료, 문화·여가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 '수요자 맞춤형 특화형 사회서비스' 및 '취약지역 집중 지원 서비스' 모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형 개발
- 제안사업 명칭, 컨소시엄 구성 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제안
-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과 향후 계획 등 상세기술

□ 제안자격 : 시군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

* 대표기관 1개 기관, 구성기관 2개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

□ 선정방법 ⇒ '사전 점검' 및 '위원회 심의·선정'

- 사업의 추진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상충 혹은 중복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 점검' 시행
 - 제안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선정 위원회」에 상정
-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선정 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시범사업 지역 선정 원칙

①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제안 사업의 타당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활성화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
- (제안사업의 공공성) 일정 비율 이상의 취약계층(저소득,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초과 계층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계획 포함
- (제안사업의 차별성)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특화 서비스 가능 여부
 - ※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및 틈새(사각지대) 서비스**를 제공

* (맞춤형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번들 서비스(지원금 매칭)가 아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예시) 저염식 식단이 필요한 암환자,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노인세대, 최중증장애로 기존 책정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추가 서비스

** (틈새 서비스 제공) 각종 정부 지원대상 조건에 맞지 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

② 사업 추진 체계 구축

- (사업 지원체계) 사업 전담 조직 운영 및 사회적경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 지원체계 구축 여부
 - * 지역내 각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 가능성
- (사업 평가체계) 사업 자문 및 자체 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
 - * 지역별 사업 자문(평가)단 구성(계획) 여부
- (기타) 기관장 관심도, 시범사업의 발전 가능성 등

IV 향후 추진일정(안)

- 시범사업 지역 선정 : 1~2월
 - 제안신청서 공모 및 신청·접수 : '19. 1. 31
 - ※ 사업 설명회(간담회) 개최 : 1월중
 - 사전검토 : 2월 15일
 - 사업심사위원회 심의 : '19. 2. 22
 - ※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시범사업 지역 선정 : '19. 2월말
- 사업시행 : '19. 3월~
 - 수행기관 사업 준비 : 3월
 -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사업 시행 준비
 - 사업 개시 : 사업 준비 후 즉시
- 사업평가 및 정산 등
 - 사업 중간평가 : '19. 8월
 - 사업 종합평가 : '19. 12월중
 - 사업 정산 : '20. 1월말까지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참고 1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의

- 사회서비스 정의(사회보장기본법 3조 4호)
 -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3대 축 중 하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 정의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조직들 (OECD)
 - 돈보다 사람,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는 조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익배분 제한이 핵심 (노대명)
-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 정의
 -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협동조합)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
 - *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
 - (마을기업)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참고 2

사업 대상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요건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고용부)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사회공헌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
- (협동조합)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
 - 금융 및 보험업 외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대상 사회 서비스·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
- (마을기업)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조직유형별 현황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자치부 지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작연도	2007년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요 참여자	취약계층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수 ('16년)	1,713개소	1,055개소	10,640개소 (사회적협동조합 731개소)	1,446개소	1,149개소

* 조직유형별 신고·설립 유형 및 실태조사 등 통계 참조